

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5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16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17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8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센터를 탄력성 있게 설치하기 위하여 유희시설을 활용하게 하고,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강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자 심의기능강화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며,
-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고문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위원 등의 임기연장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영속성을 유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유희시설 활용을 위해 “읍면 사무소” 규정을 “읍면” 으로 개정(안 제1조, 제2조, 제6조 및 제15조)
- 나. 군수와 읍면장은 유사기능 단체 등과 연계방안을 강구(안 제7조)
- 다.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(안 제7조 및 제11조)
- 라. 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이장협의회 회장을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)
- 마. 위원장, 부위원장, 당연직이 아닌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, 위원장, 부위원장의 권위 및 사고 시를 대비 직무대행 규정을 정함. (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의2)
- 바.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(안 제21조의2)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6-36호(2006.1.16. ~ 2006.2.5.)
- 의견 제출사항 없음

나. 관계법령 :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(2005. 12. .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현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을 펼칠수 있도록 분과 위원회 구성. 운영에 관한 조항을 명시 하였으며,
- 중선거제로 지방선거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군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이장협의회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장, 부위원장,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연속성을 유지토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
-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 중 개정준칙안에 따라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제출자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

- 문 : 현재 고성읍에만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도시화된 면지역까지 확산하여 설치·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?
- 답 : 회화면, 거류면지역에 주민자치센터 설치·운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